

<p>니다.</p> <p>本事業의 性格으로 보아서는 一般會計와 区分되는 特定한 地方自治團體 事業으로서 財政收支는 명확하게 把握하고, 財政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同 事業을 特別會計로 設置運營하는 것이 不可避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</p> <p>同 條例案의 主要內容으로는 歲入財源은 地域暖房事業收入, 電力販賣收入, 施設分擔金, 國庫補助金 및 融資金, 地方債 借入金과 一般會計 轉入金 등이며, 歲出項目으로는 热供給施設 및 부대시설 建設費, 热供給施設 運營 및 維持管理Fee, 預託金 및 借入金, 地方債資金의 元利金 償還과 會計運營에 필요한 經費 등이 되겠습니다.</p> <p>위의 内容을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신중하게 審查한 결과, 다른 特別會計와 마찬가지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도 철저한 自體收入支出을 통해서 投資 efficiency를 極大화하기 위해서는 特別會計로 運營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내리고, 同 條例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한 바 있습니다.</p> <p>구체적인 審查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審查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, 우리 委員會에서 審查報告드린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審查報告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文一權 수고했어요. 그렇다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查報告한 서울特別市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異議 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</p>	<p>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관리·운영)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·운영한다.</p> <p>제3조(세입)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난방사업수입(열 및 전기판매수입, 시설분담금 수입금 등) 2. 국고보조금 및 응자금 3. 지방채 차입금 4. 일반회계 전입금 5. 기타 회계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 <p>제4조(세출)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열공급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비 2. 열공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 3. 예탁금, 차입금 및 지방채 자금의 원리금 상환 4.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5. 기타 지역난방사업에 부수되는 경비 등 <p>제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.</p> <p>제6조(보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채권, 채무의 승계)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중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채권, 채무는 이 회계가 승계한다.</p> <hr/> <p>2.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 (10時 25分)</p> <p>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오늘은 모두 여섯 분 議員의 質問이 있으시겠습니다.</p> <p>회의진행은 議員의 質問을 모두 마친 후 一括하여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執行部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議員님들의 심도 있는 質問과 심도 있는 方案, 조금 전에 朴贊秀 우리 議員님께서도</p>
---	---